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5. 3. 1
개정	2007. 3. 1
개정	2008. 4. 2
개정	2010. 7. 13
개정	2012. 7.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소기업청 지원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련 중소기업과의 원활한 산학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삭제

제3조(재원) 삭제

제4조(사무실의 소재지) 삭제

제5조(사업)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효율적인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연구수행 및 학술활동
3. 기타 본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의 1조(조직)

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타 직위와 겸직가능하다.

1. 센터장
2. 팀장 및 사업담당
3. 운영위원회
4. 연구책임자
5. 참여연구원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 위원회

제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이 겸임한다.
2.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 위원회는 (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사업신청 과제에의 자체심사
2. 재원 조성을 위한 홍보
3. 재정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 상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1.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2. 운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원의 운영, 관리

제9조(부서의 협력 의무)

산학협력사업 운영·관리에 각 연구 지원부서는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산학협력 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조직)

재원의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사업비 관리는 각 연구책임자들의 청구에 의해 집행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총괄 회계장부는 전담 행정요원이 관리하며, 세부책임자 관리하에 과제별 회계장부를 둔다.
2. 인건비의 지급은 본 센터에서 일괄 지급하며, 그에 상응하는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각 연구원에 게 지급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출은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현금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모든 근거자료를 비목별로 기록 유지 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

- 며, 지역 관리기관의 요청 시 제시 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춘다.
 6. 사업비 세부집행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집행한다.

제 4 장 산학협력사업 운영 및 업무처리

제13조(과제도출)

1. 과제 도출은 공모과제와 자체도출과제로 구분한다.
2. 많은 중소기업이 본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홈 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제14조(신청 과제의 심사)

1. 과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주요 심사내용은 기술개발목표, 개발비의 적정성, 신청과제와 기업의 연관성 및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등이며, 중소기업청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공모과제와 자체도출과제는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연구)

모든 연구 진행은 세부 과제 책임자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제16조(업무처리)

기업체와의 업무처리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하며 그 이외의 업무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이 한다.

제17조(책임)

1. 세부과제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연구진행 및 연구비 집행) 세부과제 책임자가 책임지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경기도청, 중소기업청의 지적을 받을 경우 차년도 과제참여를 제한한다.
2. 수행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저등급(E)일 경우 해당과제 세부과제책임자의 교수업적평가지 이를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연구실적)

1. 참여교수에 대하여는 최종보고서에 근거하여 교수업적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2.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1회 산학연연구과제 수행의 날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